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(송재봉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8626

발의연월일 : 2026. 4. 27.

발 의 자 : 송재봉・복기왕・이재관
서영교・권칠승・한준호
박정현・김문수・강준현
이연희・김우영・이주희
김기표・박 정・민병덕
이수진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는 기본세율 60원/kg, 탄력세율 42원/kg을 적용받고, 유사한 난방연료인 LPG는 기본세율 20원/kg, 탄력세율 14원/kg을 적용받고 있음. 이에 따라 탄소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천연가스가 오히려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등 에너지원 간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개별소비세는 본래 사치성 소비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도입된 세목이나, 2026년 현재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이 약 85%에 달해 천연가스는 국민 다수가 사용하는 주된 난방연료로 자리 잡았음. 그럼에도 현행 세율체계는 과거 에너지 소비구조를 반영한 채 유지되어 현행 소비 실태와 민생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.

특히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및 환율 변동성 확대로 국내 가스요금

안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,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인 킬로그램당 20원으로 조정하여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조제2항제4호).

법률 제 호

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제2항제4호사목 본문 중 “12원”을 “20원”으로 하고, 같은 목 단서 중 “발전용”을 “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세대상과 세율에 관한 적용례)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과세대상과 세율) ① (생략)	제1조(과세대상과 세율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(이하 “과세물품”이라 한다)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.	② -----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.	4. ----------.
가. ~ 바. (생 략)	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
사. 천연가스(액화한 것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: 킬로그램당 12원. 다만,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(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)는 킬로그램당 60원으로 한다.	사. ----------20원. ----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----------.
아.·자. (생 략)	아.·자. (현행과 같음)
5.·6. (생 략)	5.·6. (현행과 같음)
③ ~ ⑫ (생 략)	③ ~ ⑫ (현행과 같음)